피해자 등 진술 신청서

(「형사소송법」 제294조의2)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	전화번호
	주소		
	피해자와의 관계	[ ] 피해자 본인 [ ] 피해자의 ( ) ※ 피해자의 법정대리인(배우자 · 직계친족 · 형제자매)의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	

대상 사건	사건번호	서울남부지방법원 고단(합) 호
	피고인	
	담당재판부	형사 제 단독 / 형사 제 합의부

위 대상사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해자(피해자의 법정대리인 · 유족)로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기를 희망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서울남부지방법원 귀중

제294조의2(피해자등의 진술권)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(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·직계친족·형제자매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"피해자등"이라 한다)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 6. 1.>
1. 삭제 <2007. 6. 1.>
2.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
3.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
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,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,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 <개정 2007. 6. 1.>
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. <개정 2007. 6. 1.>
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.